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2.9.5> (앞쪽)
■ 社会保障給付関連の共通書式に関する告示 [別紙第1号の3書式] <改正2022年9月5日> (表面)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金融情報等(金融・信用・保険情報) 提供同意書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1. 支援対象者世帯の世帯主の基本事項

관 계 관계	성 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住民登録番号 (外国人登録番号等)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2. 金融情報等提供の同意者(支援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 留意事項 : 印鑑で同意する場合は印鑑証明書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同意者が未成年者の場合、親権者等保護者の直筆のハングル署名又は指印(印鑑を含む)で代替します。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主との 関係	동의자 성명 同意者の氏名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住民登録番号 (外国人登録番号等)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金融情報等の提 供に同意する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ハングルで署名 又は指印、印鑑)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 金融情報等の提供事実を同意 者に通知しないことに 同意する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 인·인감) (ハングルで署名又は指 印、印鑑)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支援対象者の選定及び確認調査、オーダーメイド型給付の案内、受給希望の履歴管理に必要な金融財産についての調査のため金融機関等が支援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の金融情報等を保健福祉部長官、国土交通部長官、教育部長官、女性家族部長官、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特別市教育監、広域市教育監、特別自治市教育監、道教育監、特別自治道教育監(関係法律に基づく委託業務を遂行する機関長を含む、以下「保健福祉部長官等」という)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保健福祉部長官等が別紙第1号書式の必要書類として提出された通帳の口座番号の真偽についての確認を要請する場合、金融機関等が口座の名義者の氏名、住民登録番号、口座番号を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金融機関が金融情報等を保健福祉部長官等に提供した事実を同意者に通知しないことに同意します。(もしも同意しない場合は金融機関等が金融情報等の提供事実を情報提供の同意者個人に郵送します。ただし、基礎年金の場合は別添の書式「金融情報等の提供事実に関する通知要求書」を追加で提出しなければ通知できません。)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3. 金融情報等の提供範囲、対象となる金融機関等の名称 : 裏面を参照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4. 金融情報等の提供に関する同意の有効期間 : 同意書の提出後、申請するサービスの資格を決定する前(オーダーメイド型給付の案内、受給希望の履歴管理を申請した場合はその申請書の有効期間)までに資格を取得した場合は資格を喪失する前まで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5. 情報提供の目的 : 「社会保障給付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調査に関する法律」、「国民基礎生活保障法」、「基礎年金法」、「障害者年金法」、「緊急福祉支援法」、「青少年福祉支援法」、「ひとり親家族支援法」、「障害者福祉法」、「開発制限区域の指定及び管理に関する特別措置法」、「子育て支援法」、「障害児福祉支援法」、「小中等教育法」、「医療給付法」、「住居給付法」に基づく福祉対象者の選定・確認調査の支援、オーダーメイド型給付の案内及び受給希望の履歴管理のための受給可能性の確認、別紙第1号書式の必要書類として提出された通帳の口座番号の真偽の確認

□□□□년 □□월 □□일
□□□□年 □□月 □□日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金融機関長・信用情報集中機関長 殿

금융기관 등의 명칭 金融機関等の名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金融実名取引及び秘密保障に関する法律」第2条第1号に基づく金融会社等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 「銀行法」に基づく銀行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2) 「中小企業法」に基づく中小企業銀行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韓国産業銀行法」に基づく韓国産業銀行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韓国出入銀行法」に基づく韓国出入銀行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5) 「韓国銀行法」に基づく韓国銀行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6) 「資本市場と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投資売買業者、投資仲介業者、集合投資業者（共同投資）、信託業者、証券金融会社、総合金融会社及び名義改書代行会社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7) 「相互貯蓄銀行法」に基づく相互貯蓄銀行及び相互貯蓄銀行中央会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8) 「農業協同組合法」に基づく組合とその中央会及び農協銀行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9) 「水産業協同組合法」に基づく組合と中央会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0) 「信用協同組合法」に基づく信用協同組合及び信用協同組合中央会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1) 「セマウル金庫法」に基づく金庫及び中央会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2) 「保険業法」に基づく保険会社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3) 「郵便局預金保険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逓信官署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14) 「金融実名取引及び秘密保障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2条に基づく機関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2. 「信用情報の利用及び保護に関する法律」第25条に基づく信用情報集中機関: 全国銀行連合会等

금융정보 등의 범위 金融情報等の範囲

1. 금융정보
1. 金融情報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1) 普通預金、貯蓄預金、出し入れ自由貯蓄預、外貨預金等要求払預金: 3カ月以内の平均残高、3カ月間の入金額の総額*
 -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 基礎生活保障制度のみ該当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2) 定期預金、定期貯金、定期貯蓄等貯蓄預金: 預金の残高又は貯蓄総額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3) 株式、収益証券、出資金、出資持分、不動産(年金)信託: 終値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4) 債権、手形、小切手、債務証書、新株引受権証書、譲渡性預金証書: 額面金額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5) 年金貯蓄: 定期的に支給された金額又は最終残高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6) 1)から 5)までに該当する金融財産によって発生する利息、配当又は割引額

2. 신용정보

2. 信用情報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1) ローン及び延滞の状況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2) クレジットカードの滞納額

3. 보험정보

3. 保険情報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1) 保険証券：解約した場合の解約返戻金又は最近1年以内の支払われた保険金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2) 年金保険：解約した場合の解約返戻金又は定期的に受け取る金額

유의사항

留意事項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支援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がこの同意書の提出を2回以上拒否・回避した場合、「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2条第8項、「基礎年金法」第11条第4項、「障害者年金法」第9条第8項、「医療給付法」第3条の3第3項、「住居給付法」第14条、「子育て支援法」第24条第3項、「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12条の4に基づいて社会保障給付の申請が却下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 この同意書「社会保障給付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調査に関する法律」第5条、「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1条、「基礎年金法」第10条、「障害者年金法」第8条及び「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11条、「障害者福祉法」第50条の2、「小中等教育法」第60条の5、「医療給付法」第3条の3第2項、「住居給付法」第9条に基づき、社会保障給付を申請する際に一度だけ提出しても構いません。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今後「社会保障給付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調査に関する法律」第19条及び「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3条及び「基礎年金法」第11条第2項、「障害者年金法」第11条、「医療給付法」第3条の3第3項、「住居給付法」第11条に基づく確認調査の場合は、同意書を追加で提出しなくても保健福祉部長官等が金融情報等の提供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社会保障給付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調査に関する法律」第22条の2に基づきオーダーメイド型給付の案内のための金融情報等の提供に関する同意書を一度だけ提出すると、今後定期的にオーダーメイド型給付の案内のための金融財産調査を行う場合は同意書を追加で提出しなくても保健福祉部長官等が融情報等の提供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オーダーメイド型給付の案内の申請人と世帯員の金融情報等の提供に関する同意書の提出の有無によって受給可能性を確認して案内する事業の正確さが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同意者（支援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の金融情報等は、「社会保障給付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調査に関する法律」第29条第8項及び第49条、「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2条第6項及び第23条の2第6項、「基礎年金法」第12条第6項、「緊急福祉支援法」第13条第7項及び「障害者年金法」第9条第6項及び第12条第6項、「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12条の3、「障害者福祉法」第50条の3第6項、「障害児福祉支援法」第15条第6項、「医療給付法」第3条の3第3項、「小中等教育法」第60条の6、「住居給付法」第15条第6項に基づき、対象者選定の確認調査、オーダーメイド型給付の案内、受給希望の履歴管理、給付金口座の有効性を確認するための金融財産等に関する調査の目的以外に他の用途で利用されたり他人若しくは機関に提供されることはなく、これに違反した場合は「社会保障給付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調査に関する法律」第54条又は当該法律の罰則規定を適用して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